



## 제 2 장

###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제 2 장

## 반론보도 게재 사례

### 사례. 7

보건복지부가 희귀 난치질환자를 위해 마련한 첨단재생의료법안이 대형병원만을 위한 특혜법안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1·2, 2017서울조정3·4(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
|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 인터넷 서울경제)            |
|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1. 3.                            |
|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희귀 난치질환자를 위해 마련한 첨단재생의료법안이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만든 사실상의 맞춤형 특혜법안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첨단재생의료법안은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니고 희귀·난치질환자 등을 위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만든 법안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대상은 대형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기사 내용이 전반적으로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반론보도를 양 당사자에게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제하의 기사(서울경제 2016년 12월 15일자 8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6년 12월 14일자 산업면)

## ■ 내 용

정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의 ‘맞춤형 특혜 법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차병원은 민간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유치하고 숙원사업이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승인받는 등 현 정권에서 눈에 띄는 혜택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정법이 두 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올 6월과 11월 발의했지만 모두 보건복지부가 의원실에 요청한 사안으로 사실상 정부 입법이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재생의료법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재생의료법은 △병·의원들이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줄기세포 기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일정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병원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허가하도록 한다는 것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이 중 후자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치료제를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10년 넘게 걸린다. 줄기세포 치료도 환자의 세포를 별다른 조작 없이 투여하는 경우 외에 배양 등 조작 과정이 들어가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번 재생의료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줄기세포 치료까지 정식 허가 절차 없이 전문가 심의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이 법안이 발의되자 줄기세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줄기세포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법안 검토서에서 △환자 투여 전에 확인해야 할 필수 검증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오랜 시간을 들여 정상적 경로로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들의 의지를 꺾어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줄기세포 전문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은 재생의료법이 ‘대형병원만 배 불리는 법’이라고 우려하지만 청와대 추진 법안이라는 얘기가 많아 대놓고 반대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재생의료법에는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승희 의원 발의안에는 ‘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절성을 심의한다’고 돼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재생의료법은 현재 편법으로 이뤄지는 줄기세포 기술을 합법화하겠다는 얘기이자 그 기술에 대해 환자에게 돈까지 받겠다는 악법”이라며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줄기세포 치료에서 환자라도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많은 대형병원들만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기업·중소병원 등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맞다”며 “3~4개 대학병원에서는 재생의료법의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정부는 의원실을 통해 법안 제정을 밀어붙였다. 복지부는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선진국에서도 정식 허가 절차 없이 환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재생의료법은 식약처 허가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학술적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다. 연구자 주도 임상이 현재 상업용 임상과 같은 엄격한 조건으로 운영돼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럽의 경우 ‘병원면제 제도(hospital exemption)’를 통해 일부 재생의료 치료에 대해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있지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국의 관할 관청’이다. 전문가 위원회라는 ‘민간’이 치료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 재생의료법과 차원이 다르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구 임상 제도를 개선하면 될 문제를 별도의 허가 트랙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의과대학 교수는 “재생의료법은 대형병원 전반에 유리한 법안이지만 줄기세포 연구에서 가장 앞선 차병원의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차병원의 여러 특혜 의혹을 국회 등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서울경제> 제1면 좌측 상단에 아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인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5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서울경제>의 홈페이지(<http://www.sedaily.com>)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2]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 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 기재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1. **제목** :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2. **본문** : 본 신문은 금년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특혜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왔고 전문가 심의만 거치면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의료가 유통되고 대학병원만 손쉬운 치료제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서울경제신문은 금년 12월 15일자 종합 8면, 줄기세포치료 활성화 한다며... '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특혜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왔고 전문가 심의만 거치면 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 않은 의료가 유통되고 대학병원만 손쉬운 치료제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 난치 질환자와 같은 다른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 야 의원실에서 발의된 법률로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법안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본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포함된 첨단재생의료실시의 심의 및 승인 절차는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연구를 승인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원하는 경우 누구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대상은 대학병원 또는 대형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임상연구 실시계획의 승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 과학적 유효성,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임상연구를 거친 세포 치료제 등을 일반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품목허가 등 의약품 판매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가 유통되거나 대학병원만 손쉬운 허가절차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만 유리한 특혜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첨단재생의료법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보는 2016년 12월 15일자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 한다며...‘맞춤형 특혜법안’ 미는 정부」 제하의 기사에서 차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특혜법안’을 추진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법이 차병원 등 대형병원 특혜법률이 아니며 희귀·난치 질환자 등을 위한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 신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연구를 승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 1. 31.(화)까지(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서울경제> 종합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보도문 제목 위에 실선을 그어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국회 발의 ‘재생의료법’ 2건 사실상 정부 입법)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고, 본문활자는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2017. 1. 20.)부터 2017. 1. 31.(화) 18:00까지의 기간 중(단,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48시간 동안 <인터넷 서울경제> 홈페이지 (<http://www.sedaily.com/>) <산업>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DB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이어 게재한다.
4. 피신청인은 제2항, 제3항과 같이 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고,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이 이어 게재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5.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 20.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첨단재생의료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경제 2017년 1월 25일자 8면, 인터넷 서울경제 2017년 1월 24일 산업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8

신청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가 고객과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정당한 환불요구를 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사 건   | 2017광주조정4·5, 2017광주조정6·7(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
| 신 청 인 | 전○○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광주방송(KBC-TV, 인터넷 KBC)             |
| 중 재 부 | 광주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2. 6.                            |
|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특정 결혼정보업체가 연회비로 수백만원을 받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고, 계약 당시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는 제보를 토대로, 결혼정보업체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당시 환불조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분쟁을 종결할 것을 양 측에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제하의 보도 (KBC-TV 2017년 12월 23일자 '8시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KBC 2017년 12월 23일자 사회면)

## ■ 내 용

▷ 앵커 :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비를 내고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체가 약속한 말만 믿고 계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 기자 :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지난 6월, 4백만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광주의 한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두 차례 여성을 소개받았던 이 씨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이 모 씨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여성 소개를) 계속 시켜주는 걸 얘기했었어요. 계약서 상으로 2회라는 걸 저는 보질 못했어요 매니저가 해주라고 하는 대로 그냥 적기만 했을 뿐이지 솔직히 (385만 원에 2번 소개 계약을)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 씨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 업체관계자 :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주고 사인을 받아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자꾸 무엇이든지 들어놓고 안 들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결혼정보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 사례는 광주\*전남 4백 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천 건에 이릅니다. 특히 공정위 약관에 따르지 않고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건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계약 불완전 이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조○○ / 한국소비자보호원 호남지원 조정관 : “계약서상의 내용에 구두상 약조 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모두 기재하셔야 되고 또한 환불 규정과 같이 약관을 잘 꼼꼼히 확인하셔서 계약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9백여 개 넘게 난립한 결혼정보업체들의 과당경쟁이 허위 과장 광고와 배짱 영업까지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KBC 광주방송 <KBC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또한 각 포털사이트 뉴스도 삭제토록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KBC(www.ikbc.co.kr)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각 포털사이트 뉴스도 삭제토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결혼정보업체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016년 12월 23일 KBC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업체가 소비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하고 환불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소비자의 제보는 허위된 것으로 특정업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반론보도

나. 본문 : 지난 해 12월 23일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정보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객에게 주선 횡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고객에게 주선횡수 등 계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필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 2. 28.까지 KBC-TV <저녁뉴스> 프로그램에 제1항의 보도문을 1회 방송하되, 제목은 방송화면 하단부에 자막으로 게시하고 본문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도록 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은 KBC-TV 홈페이지(<http://www.ikbc-tv.co.kr>) <8시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에도 제1항의 보도문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3항의 사항을 전송한다.
6.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각 조정대상방송을 보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2. 23.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연회비만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7년 2월 24일자 ‘저녁뉴스’ 프로그램, 인터넷 KBC 2017년 2월 24일자 저녁뉴스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9

항공회사 조종사 복수노조 중 하나인 신청인 노조가 사측에 우호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b>사 건</b>   | 2017서울조정482 · 483 · 484 정정 · 반론 · 손배청구 |
| <b>신 청 인</b> |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                           |
| <b>피신청인</b>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한겨레21)                      |
| <b>중 재 부</b> | 서울제7중재부                                |
| <b>접 수 일</b> | 2017. 3. 14.                           |
| <b>처리결과</b>  | 조정성립(반론보도)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만화를 통해 ○○항공 조종사 복수노조 중 하나인 신청인 노조가 사측 의견을 옹호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했을 뿐이며, 해당 보도로 인해 노조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해당 기사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정보도 보다는 반론보도를 권유하였고, 반론보도 내용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게재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그들만의 하늘 ①, ②』 제하의 기사 (한겨레 21 ‘모두가 래퍼’ 코너 2017년 2월 13일자 78~79면, 2017년 2월 20일자 78~79면)



- 내 직업은 항공사 부기장이야.
- 다들 이렇게 생각할거야. 여러 나라를 좋아하는 비행기로 조종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 국제선은 대부분 저녁 출발, 새벽 도착이라 항상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뎌야 해.
- 한 달의 절반 이상 외박하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사이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 비행 전날 준비는 필수야. 목적지의 공항 절차 차트, 통신 절차 연구
- 이륙 최소 2시간 전까지 브리핑실 도착해 서류 확인 및 준비
- 브리핑 뒤 항공기로 이동해 이륙 준비. 공항 도착 뒤 호텔에서 먹을 비상식량 준비 (저녁에 음식 구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짧아서 대부분 휴식과 수면 뒤 다시 비행하러 이동
- 귀국하면 시차 적응이 어려워. 도착 당일은 멍한 상태로 다음 비행일정까지 대부분 집에서 휴식.
-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매년 항공 종사자 신체검사1급(가장 복잡하고 엄격한 신체 검사)을 1~2회 취득. 항공조종사 영어시험은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격 획득
- 수준 높은 복합기술이 필요하며 공부와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이야.
-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여건 때문에 추락 및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켜서 오래 전에 파업한 적이 있었어.
- 외국 항공안전 컨설팅으로 안전의식에 큰 변화가 있었지. 이것을 계기로 처음 노조가 회사와 협상해 근무시간 기준 및 제한, 각종 초과수당과 복지 기틀을 마련했어.
- 그런데 얼마 안 돼 회사는 출신에 따른 조합원의 자존심을 이용해 노조 분열에 성공했지.
-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고 그나마 협상 결렬로 장기간 거의 인상되지 않았어. 회사는 항공사업 독점으로 많은 이득을 챙겨왔지.

- 재벌 독점경영과 비정상적인 주주행사권으로 수많은 법인과 자회사를 만들어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으면서
- 해마다 적자를 내세워 임금인상을 거부하면서 임원 연봉은 획기적으로 올리지.
- 해외 체류 호텔은 재계약할 때마다 월가절감을 핑계로 모텔급으로 변경했어. 문제는 해외 체류시 관광이 아닌 시차적응 및 컨디션관리를 위한 근무의 연장선임을 부정하고 보안과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저가 숙소로 하향시키고 있다는 점이야.
- 해외 체류시 머무는 저가호텔은 문제가 한둘이 아니야. 침대에서 벌레한테 물려서 치료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보다 더 심각한건...
- 저가 호텔에 가끔 치안 문제가 일어나 승무원이 성희롱을 당하거나 외출 중 도난사건이 발생하기도 해.
- 회사 쪽은 적자를 주장하며 많은 조종사들이 저가항공사와 중국 항공사로 이직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 조종사들에게 근거도 없이 산출한 교통비의 상환을 요구하지.
- 대부분의 항공사는 교육상환비가 아예 없거나 몇 년 안에 소멸되지만, 이 회사는 교육과 항공기 전환 등에 대한 동의서 없이 인사조치를 해서 이직하면 교육비를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어.
- 민간 항공기는 기장과 부기장으로 조종사가 구성되는데 부기장이 기장이 되기까지 저가항공사는 통상 5년이 걸리지만, 특정 항공사는 11~12년이 걸리고 조종사가 부족한데도 외국인 기장을 채용함으로써 부기장의 기장 승급이 지연되고 있어.
- 하지만 외국인 조종사들도 연봉(국내 조종사의 2배 이상)과 복지에 불만을 느끼고 다시 외국으로 많이 이직하고 있지.
- 민간항공기 출신 조종사는 최소 1억 원대 비용과 2년 이상 기간을 투자해 국가 자격증을 딴 뒤 항공사에 취직하고, 군 전역 조종사는 최소 10년 이상 근무하고 국가자격증을 획득해야 항공사에 취직할 수 있어.

- 매년 2회 구술 및 시뮬레이터 평가, 연 1회 비행평가를 해. 실제 비행시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상황을 자동기록하는 장치로 인해
- 엄격한 기준을 벗어나서 비행하면 회사에 불려간다는 압박감이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 인적 요인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인명피해나 항공기 손상이 아님)가 발생하면 회사의 자의적 기준으로 면직 및 감봉. 장시간 무급비행이나 중지 등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게 현실이야.
- 그래서 이직하는 조종사가 늘어나니까 조종사 수급에 위기를 느낀 회사는 신뢰하기 어려운 외국인 조종사로 충원하고
- 같이 비행하는 한국 조정사들은 그들의 실력을 경험하고 불안함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어.
- 수많은 협상에서 실패를 거듭한 노조는 회사 오너가의 비상식적 행태를 버텨오다, 적자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수십 대의 비행기 구매계약을 하고 파격적으로 임원 월급을 올리는 것에 분노하며 그에 비등하는 조종사 노동자의 급여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어.
- 하지만 회사 쪽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계속 제시하지.
- 특정 항공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는 노조가 분리되어 있고 그중 한 노조가 회사 쪽에 우호적이기 때문이지.
- 한쪽 노조가 상생을 내세우며 회사쪽 의견을 옹호하니 회사와 노조의 임금 및 처우개선 협상에서 두 노조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갈등해.
- 노무현 정부 시절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하더라도 최소 80% 이상 항공기 운항을 해야하는 규제 때문에 파업효과가 다소 미비한 것을 알고 있어.
- 오히려 회사는 노조 파업을 빌미로 적자·비인기 노선을 없애려 해.
- 회사의 비상식적인 조종사 대우, 업무과정에서 오는 긴장감과 소통의 부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 스트레스와 피곤함으로 인한 무기력함...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이 좀 힘드네.
- 비행을 좋아해서 이 직업을 택했고 운이 좋아 전투기와 민간항공기를 타며
- 처음 가는 나라로 비행할 때의 설렘이 소소한 활력소지만
-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가족에서 해답을 찾아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찾아야지.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겨레21 ‘모두가 래퍼’ 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면에 [별지 1]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래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그들만의 하늘”의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한겨레21 ‘모두가 래퍼’ 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면에 [별지 2]의 반론 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래퍼”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그들만의 하늘”의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모두가 래퍼 21화 그들만의 하늘’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잡지는 지난 2017년 2월 13일과 2월 20일에 걸쳐 ‘모두가 래퍼’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란에 ‘그들만의 하늘’ 이라는 제목으로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이 ○○항공의 타 조종사노동조합과는 달리 ○○항공 사측에게 전적으로 아부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노조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했을 뿐 ○○항공 사측과 비밀리에 협의하여 사측에 유리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목 : ‘모두가 래퍼 21화 그들만의 하늘’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잡지는 지난 2017년 2월 13일과 2월 20일에 걸쳐 ‘모두가 래퍼’라는 만화형식의 기사란에 ‘그들만의 하늘’ 이라는 제목으로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이 ○○항공의 타 조종사노동조합과는 달리 ○○항공 사측에게 전적으로 아부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에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률에 보장된 ○○항공 조종사의 복수노조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한 것으로서 이 기사로 인하여 ○○항공 내 ‘노-노갈등’이 유발되고 해당 노조의 노조원들이 지인들로부터 ‘어용노조’에 가입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노조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업무에 극심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 가. 제목 : ○○항공조종사새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2월 13일과 2월 20일자 ‘모두가 래퍼’ 라는 만화 코너에 “그들만의 하늘” 이라는 제목으로 ○○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이 ○○항공의 타

조종사노동조합과는 달리 회사 쪽 의견을 옹호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노조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했을 뿐, ○○항공 사측과 비밀리에 협의하여 사측에 유리한 행동을 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본지 만화의 일부 왜곡된 묘사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노조원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가. <한겨레21> 70~80면 사이에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21>의 통상적인 정정 또는 반론보도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체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나. <한겨레21>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카툰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며 (게재 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 3. 피신청인은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4. 12.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항공조종사새노조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7년 4월 24일자 6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0

집 주인인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b>사 건</b>   | 2017제주조정8·9 반론·손배청구   |
| <b>신 청 인</b> | 김○○                   |
| <b>피신청인</b>  |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방송(제주도민일보) |
| <b>중 재 부</b> | 제주중재부                 |
| <b>접 수 일</b> | 2017. 5. 23.          |
| <b>처리결과</b>  | 조정성립(반론보도)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임대인인 신청인이 이주민인 세입자와 10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땅을 매각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등 땅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임차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사인 간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다수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며 반론보도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법원의 조정과정 중 신청인이 고함을 쳤다는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위원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정정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의 형식으로 신고 피신청인이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제하의 기사 (제주도민일보 2017년 5월 15일자 사회면)

## ■ 내 용

서귀포시 ○○읍 한 ○○학교에 근무중인 교감선생님이 땅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이들을 씩씩하게 하고 있다.

특히 나름대로 소송을 벌일만한 명분을 갖고 있겠지만,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제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급증하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갈등 양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주사회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읍 한 마을 주민들 이야기를 종합하면 ○○학교 교감선생인 김모씨는 빌려준 집에 달린 사용하지 않는 감귤 창고를 이웃집에 허락없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세입자 조모씨 부부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야기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지난 2011년 암 투병중인 부인과 함께 제주로 내려왔다.

제주로 온 조씨는 서귀포 시내에 거주하다가 보다 쾌적한 공간을 알아보던 중 2013년 한 농가주택을 찾아 그 집주인인 교사 김씨와 계약을 했다. 연세 250만원이었다.

조씨는 집을 가꾸기로 마음먹고 정성을 들였다. 집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고 조씨는 기억했다. 조씨는 “계약 당시 집주인 김씨는 ‘○○리에 아픈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 10년 동안 살면서 집만 잘 가꿔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집주인 김씨의 말을 듣고 10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2015년 일이 터졌다.

조씨는 “2015년 어느날 집주인인 교사가 창고에 보관해둔 부군의 유품과 골프채 등이 없어졌다고 트집을 잡더라. 2013년 당시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뭘지도 모를 짐과 사과 껌이 쌓여져 있던 창고였다”며 “근데 두 달 후에 소장이 날아오더라. 뭔가 하여 열어봤더니 교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조씨는 “소장을 접해보지 않았던 터라 불안하고 불쾌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주인이 교편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비상식적인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땅값이 오르니까 본인 소유의 땅을 매각하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어 “집수리비와 변호사 선임 등에 2500만원을 썼다. 돈도 돈이지만, 세입자에게 본인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텐데 정상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소장부터 보내는게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교편을 잡았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조씨는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 되던 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그러나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주를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 것인가. 참 씩씩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교사인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조씨 부부를 상대로 ‘주택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씨가 낸 소장엔 따르면 “조씨 부부에게 빌려준 주택을 다시 돌려주고 2016년 3월 31일부터 땅과 주택을 되돌려주는 날까지 매월 20만8333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 달라”며 “피고 조씨는 원고에게 1050만8600원 및 이에 대해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집주인인 김씨가 보낸 소장엔 따르면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과 창고 등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2005년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현재까지 교사인 김씨 명의로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김씨는 2013년 3월30일 조씨 부부와 2023년 3월30일까지 10년간 임대기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김씨와 계약을 맺을 당시 임대한 집에 붙어 있던 창고였다.

김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대지상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미등기 창고도 있는데, 그 창고의 한켠에는 원고가 남편의 유품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세입자 조씨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면 조심스럽게 보관해야지 창고에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하고 있다.

집주인인 김씨는 또 “원고는 대지와 지상 주택 등을 피고들보다 앞선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때에는 물론이고 피고인들이 임대할 때에도 창고의 한켠에 보관중인 남편의 유품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창고까지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시키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씨는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집주인 김씨가 소유하고 있는 창고는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어 “피고인들은 원고 몰래 사용료 200만원을 받고 이 창고를 다른 이웃 주민 김모씨에게 사용하도록 해 버렸다”며 “(때문에 창고를 전대받은) 이웃주민 김씨는 창고내에 보관돼 있던 원고 남편의 유품들을 창고 밖으로 꺼내어 방치하고, 심지어 창고의 내부 구조까지 마음대로 변경해 버렸는 바, 이는 피고들이 명백하게 임대차 계약상의 전대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이웃주민에게서 창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애초에 집주인과 계약 당시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창고를 조씨로부터 빌린 김씨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들은 이미 신뢰 관계가 깨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했다.

세입자 조씨는 “최근 당사자 조정을 위해 법원에서 집주인인 김씨를 만났는데 고함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더라”며 “이런 분이 교육자로 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다”고 기억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 모습. 세입자 조씨는 왼쪽 파란색 문 안쪽으로 집주인 김씨의 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주인 김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도 김씨의 돌변한 태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창고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웃 주민 김씨는 “30년 넘게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이웃주민 김씨는 암 투병중이다.

이웃주민 김씨가 교사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발신인은 김OO님과 30년 가까이 친 자매처럼 살아온 관계였으나, 최근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으나 사활을 걸고 투병중인 본인(이웃주민 김씨)에 대한 핍박과 지속적인 소송제기 등으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배신감마저 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김씨는 “수신인(집주인 김OO)께서는 과연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들을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교육공무원인 교감’으로써 자질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적어나갔다. 이웃주민 김씨는 “30년전부터 잘 아시다시피 수신인(집주인 김OO) 소유의 OO읍 OO리 OOOO번지 내 불법건축물인 창고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신인(집주인 김OO) 승낙을 득하고 2011년 전부터 본인이 일부 개조해 사용해 오다가 수신인께서 소를 제기, 법원의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원상복구를 한 바 있다”며 “창고 사용을 허락했던 주된 이유가 33제곱미터 땅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잘 알고 승락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1987년부터 무단점유 대지 반환 요구를 수십 회에 걸쳐 직접 요구했고 급기야 2010, 2013, 2016년경에는 지적측량을 통해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한 채 ‘법으로 찾아가라’는 허무맹랑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주민 김씨는 또 “이에 따라 본인은 2017년 5월말까지 해당 본인 유인 대지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며 1987년 1월부터 2017년 5월3일까지 약 360개월간 무단 사용해 이익을 취했던 1000만원 상당의 배상 또한 요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정산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웃주민 김씨는 이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귀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며 “만일 거부할 경우 제주교육청에 민원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랫집에 사는 이웃주민 김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랫동안 내 땅에 창고건물을 지어놓고 지금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는 창고를 부숩달라고 요구하며 법적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갑질 행태가 교육자로서 해야 할 일인가”라고 말했다.

집주인 김씨는 <제주도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세 250만원 받고 서귀포시에 있는 또다른 집을 빌려 연세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고는 “이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기사화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제주도민일보(www.jejudomin.co.kr)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며 아래의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제목 :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본 인터넷 제주도민일보는 지난 2017년 5월 1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이라는 제목으로 세입자 이모씨 부부와 아랫집 김모씨 인터뷰와 제공자료를 근거로 ○○읍 ○○ 교감 김모씨가 땅값이 오르자 10년 계약한 세입자를 3년 만에 쫓아내려 하며 비상식적인 교사, 미래를 책임지는 꿈나무들을 이끌어 가야할 막중한 교육공무원인 교감으로서 자질이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협박 피해 당사자인 ○○읍 ○○ 교감 김모씨는 본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이유를 최근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집을 팔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에게 팔아달라고 하거나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소송 문제를 한쪽의 주장만을 대다수 인용하여 소송 내용을 왜곡되게 기사화함으로써 이는 판결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15일자 「“땅이 뭐길래...”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제목의 기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땅을 매각하기 위해 모 교감선생님이 10년 계약한 이주민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3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이웃주민과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감선생님은 임차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임차인이 창고를 무단으로 전대하고 동의 없이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소송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땅을 매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법원의 조정과정 중 고함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교감선생님은 이웃주민이 본인의 창고에 있는 짐을 불태우고 버렸으며, 창고를 방으로 개조하기 위해 구조를 변경하여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보도로 본의 아니게 교감선생님께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제주도민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단 이상 및 뉴스>사회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며(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하고

---

초기화면에는 게재 후 24시간 동안 유지한다),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6. 8.

---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주민vs제주교사 소송전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제주도민일보 2017년 6월 9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1

신청인 아파트가 경비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고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게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                                       |
|--------------|---------------------------------------|
| <b>사 건</b>   | 2017서울조정1683, 2017서울조정1684(병합) 각 정정청구 |
| <b>신 청 인</b> | ○○○○○ 입주자대표회의                         |
| <b>피신청인</b>  | 주식회사 와이티엔(YTN), (주)와이티엔플러스(인터넷 YTN)   |
| <b>중 재 부</b> | 서울제7중재부                               |
| <b>접 수 일</b> | 2017. 9. 11.                          |
| <b>처리결과</b>  |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한 경비원을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경비원들에게 화장실에서 숙식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경비실 책상, 휴게실 등을 숙식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인사발령은 해당 경비원의 근태불량에 따른 것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원 보도에 반론이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비원들에게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고, 별도 공간이 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단독] “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8월 24일자 ‘이슈오늘’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8월 24일자 사회면)

## ■ 내 용

▷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발도 뺨을 수 없는 좁은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재래식 화장실에서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자,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 기자 : 예순을 훌쩍 넘긴 경비원 김 씨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서둘러 식사를 해결합니다. 앉을 곳이 마땅히 없다 보니 그대로 서서 끼니를 때우는 겁니다. 워낙 공간이 비좁은 데다 역한 화장실 냄새 탓에 밥 먹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 김 모 씨/ 경비원 : 냄새가 올라오는데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소변보고, 밥 해먹고, 잠자고. 이거야말로 현대판 노예죠.

화장실과 맞닿아 있는 경비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다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어 야간에 잠시 휴식이라도 취하려면 머리맡에 변기를 두고 누워야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인 남성이 팔도 채 다 펴지 못할 정도로 비좁습니다.

김 씨가 일하는 곳은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서울 강남의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단지 자체가 낡아 사실 경비실 개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일한 김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관리사무소 측은 제한절을 앞두고 아파트에 태극기를 달라고 지시한 뒤 업무 처리가 늦었다며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되레 모욕적인 말이 돌아왔습니다.

▷ 김 모 씨/ 경비원 : 나이 먹어서 노망들었다고 모욕하고…. 업무 지시인데 거역하느냐고. 거기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죠.

이후 김 씨가 인권위와 청와대에 진정을 넣자,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는 김 씨를 출근만 두 시간이 걸리는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로 인사 이동시키고는

지각이 잦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습니다. 아파트와 용역 업체 측은 김 씨가 분란을 조성하고 업무에 지장을 끼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묵묵히 견뎌왔던 고령의 경비원들은 부당한 처우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1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YTN-TV <YTN24, 이슈오늘, 뉴스타워, 이슈N이슈, 뉴스Q, 뉴스 나이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YTN-TV 홈페이지(<http://www.ytn.co.kr/>)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정정보도문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24일자 “교도소 독방만도 못해요”...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고 보도내용 중 “화장실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항의로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화장실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비원들은 없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항의로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화장실에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 2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숙식을 화장실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의하는 경비원을 다른 아파트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를 하도록 강요한 바는 없으며, 지하 1층의 개인공간 및 공용 휴게실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가. YTN <뉴스 나이트> 프로그램에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방송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YTN 홈페이지 뉴스>사회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며(게재방식은 통상의 기사와 동일하게 한다), 조정대상기사(5개) 및 2017. 8. 24.자 <뉴스Q> 프로그램에 보도된 관련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0. 2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화장실에서 숙식해결하는 경비원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YTN 2017년 10월 28일자 ‘뉴스나이트’ 프로그램, 인터넷 YTN 2017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사례. 12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유아용 매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                                       |
|-------|---------------------------------------|
| 사 건   | 2017서울조정2130, 2017서울조정2131(병합) 각 정정청구 |
| 신 청 인 | 주식회사 ○○○○○○○○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인터넷 연합뉴스TV)      |
|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
| 접 수 일 | 2017. 11. 29.                         |
| 처리결과  | 각 조정성립(반론보도)                          |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업체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가 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지만 사용 금지 원료가 검출되어 4개월 만에 취소되었고, 신청인 업체는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고, 인증취소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라고 단정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심리 결과, 해당 물질의 검출 경위와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진행 사실을 반영하여 신청인의 반론을 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 『친환경 제품이라더니…유아 매트서 유해 물질 검출』 제하의 보도 (2017년 11월 20일자 연합뉴스TV 'NEWS 20' 프로그램, 2017년 11월 20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산업면)

## ■ 내 용

▷ 앵커 : 내 아이가 쓰는 물건이라면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물건 쓰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던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친환경 인증만 믿고 구입했던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큼니다.

▷ 기자 : 아이를 키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프리미엄 유아용 매트입니다. 올해 7월 업계 최초로 환경부 공인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했지만 지난 15일 인증 4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트 라인에서 환경부가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한 ○○○○○○○○○(○○○○)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이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르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 트립니다.

▷ 김 모씨/ 피해자 : “화학적인 제품을 썼다는 것을 갑자기 알게 되니깐 당황스럽고… 대응이나 조치는 전혀 없고 자기들도 취소를 당하게 돼서 억울하다 (사과문에) 그런 내용만 있으니깐 화도 많이 나고요.”

업체 측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생산 라인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일부 혼입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 청소용제로 사용되었더라도 상당량의 잔여물이 남아 다음 공정에 혼입된 것은 관리 부실로 인한 제품 구성의 원료 사용으로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 환경부 관계자 : “청소하는 과정에서 들어갔다면 소량만 나오는데 100ppm이 초과됐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취소한 겁니다.”

비싼 돈을 주고도 안전한 친환경 제품을 사줬다고 뿌듯했던 부모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을 연합뉴스 TV NEWS 20(8시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 하되, 멘트가 진행 되는 동안 정정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연합뉴스TV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1. 제목 : ‘논란의 소지가 분명한 검증 기준으로 취소된 친환경 인증 피해를 업체로 전가’
2.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0일 8시 NEWS 20 프로그램에서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 유아 매트서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특정 유아 매트 제작 업체의 모든 제품이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도 했으며, 인증을 취소 당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을 통해 대면 취재 후 인터뷰 및 보도진행을 요청했으나 환경부 담당자 인터뷰의 극히 일부 녹취 부분을 인용하여 ‘유해물질’이란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으로 보도 되어 소비자와 업체의 혼란과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전술하였듯 업체의 대면 취재를 거부했고, 관계자와 1차 1시간 59분, 2차 26분 56초 총 2시간 30여 분 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 했으나 실제 방송 시 업체의 입장을 육성으로 전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 기술원은 해당 검출 물질은 “금지물질은 금지 물질인데 인체 유해성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으며 그 기준을 만들고 싶으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라”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체는 취소 기준의 모호성과 부적합을 근거로 인증취소를 취소하는 행정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 하지 않은 보도 ‘인체유해성’ 논란과 불안감을 야기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유아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20일 8시 NEWS 20 프로그램에서 “친환경 제품이라더니... 유아 매트서 유해 물질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광고하던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아 매트 생산업체 측은 검출된 물질은 2017년 7월 ~ 9월 초까지의 생산 공정 중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친환경 인증 취소는 ‘제조 공정상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특정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한 업체 측은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상대로 친환경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피신청인은 2017년 12월 27일(수)까지

가. 연합뉴스TV 「NEWS 20」 프로그램 말미에, 제1항의 보도문 본문을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기사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나. 연합뉴스TV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tv.co.kr/>) 조정대상보도 다시보기

서비스에도 제1항의 보도문이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다.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나호의 사항을 전송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을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7. 12. 15.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친환경 제품이라더니...유아 매트서 유해물질 검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연합뉴스TV 2017년 12월 23일자 ‘뉴스20’ 프로그램, 인터넷 연합뉴스TV 2017년 12월 23일자 ‘다시보기’ 섹션)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